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 외 25명

나. 의안번호 : 제 897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8. 7.

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.

## 2. 제안이유
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,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
-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(안 제31조10호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3.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·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취지로,
- “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”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10<sup>m³</sup>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.
- 참고로,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896호, 김혜련 의원 외 30명 공동발의)이 발의(2019.08.07.)되어 있어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34조)

현행	개정안
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1. 천재지변인 경우 : 면제 2.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: 면제 3.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: 면제 4. 제빙업·빙과류제조업·청량음료제조업·주류제조업·시멘트·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: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: 10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면제 6.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	제34조(감면) ① 1. ~ 9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우 :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</p> <p>8.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: 면제</p> <p>9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10.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</p>	<p>10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<u>선순위자 1명</u>의 경우 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</p> <p>11.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</p>

## ■ 감면대상 적정성 측면

- 독립유공자란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）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<sup>1)</sup>과 애국지사<sup>2)</sup>를 말하며,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법 제5조<sup>3)</sup>에 따라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며느리 순임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(宣揚)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.

- 1) 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·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- 2)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- 3)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배우자
  2. 자녀
  3. 손자녀(孫子女). 다만,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.
  4.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<sup>4)</sup>를 살펴보면 전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74.2%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, 70.3%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, 도시노동자 평균(2015년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22만원, 2015년 기준 가구당 총자산 2억 52백만원)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, 일제(日帝)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료됨.
- 다만,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등의 현황 파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하는 바 매년 감면대상의 주소 이전, 사망, 해외이주 등의 각종 변동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징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.

## ■ 형평성 측면

- 3.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·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하수도 사용량  $10m^3$ 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,

4)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, 2017, 3·1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5)에 따른 국가

- 5) 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  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  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  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  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 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  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  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  10. 참전유공자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 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11. 4·19혁명사망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  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  13. 4·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  14. 순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15. 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유공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- 참고로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대상은 총 114,563명이고, 이 중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총 보훈대상의 1.6%에 해당하는 1,990명임.

[표 2]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

(2019. 7. 31. 기준 / 단위 : 명)

계	독립유공자 및 유족	상이군경 (전상/공상)	전몰순직 군경유족	무공 보국수훈자	4.19 유공자	5.18 유공자	고엽제 후유의증자	특수임무유 공자	참전 유공자	기타국가 유공자
114,563	1,990	17,946	8,935	22,917	324	589	7,482	601	53,625	154

※ 보훈대상자 현황은 본인 및 유족까지 포함

## ■ 재정적 측면

-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,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6)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가목7)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

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② ~ ⑥ 생략

6) 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7) 제5조(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)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

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, 본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해 하수도  $10m^3$  이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려는 경우 면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액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‘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(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6호, 2019.7.19.)’을 수립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액에 대해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간 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으로 감면액을 살펴보면, 2018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월평균 하수배출량은 약  $5.83m^3$ 로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‘ $10m^3$  이내 사용량에 대한 면제’는 약 1.7명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되며, 월  $10m^3$ 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1인당 감면액은 월 4,000원, 연 48,000원에 해당함.
- 따라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원이 감면을 받을 경우(1,990명, 2019년 7월 기준, 국가보훈처) 연간 총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약 9천 6백만원 수준으로 추계됨.

---

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
  - 가.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
  - 나. - 다. 생략
2. 생략



- 참고로, 서울시는 본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·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부과·징수 전산망의 수정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등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, 본 개정안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## ■ 종합

-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, 특히 금년이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,
-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용한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함.
- 다만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감면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, 향후 회계 간 재정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혜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